

평화·통일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평화통일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는 한반도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교회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며 동북아시아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 직

제3조 (조직)

본 위원회는 아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총회 공천 9인(여성 1인 이상)
2. 위원회 추천 2인
3. 기관 추천 4인 : 평화공동체운동본부 1인, 여신도회 1인, 남신도회 1인, 청년회 1인

제4조 (임기)

본 위원회의 임기는 3년조로 한다.

제3장 임 원

제5조 (임원)

본 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임원을 둔다. 위원장 1인, 서기 1인

제6조 (임원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7조 (임원 선정)

임원은 정기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정한다.

제4장 회 집

제8조 (화집)

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1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총회 후 첫 번째 모임을 정기회로 한다.

제5장 사 업

제9조 (사업)

본 위원회는 제2조에 의해 민족의 염원인 평화 통일의 성취를 선교의 중요한 과제로 삼아 이를 위한 연구와 협의, 정책과 방향을 설정한다.

제10조 (사업실행)

본 위원회의 사업은 평화공동체운동본부가 시행한다.

제11조 (사회선교사 추천)

본 위원회는 효율적, 전문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의 시행세칙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선교사를 추천한다.

제6장 재 정

제12조 (재정)

본 위원회의 재정은 총회의 예산과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7장 개정 절차

제13조 (개정 절차)

이 규정은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를 준용한다.

1984년 9월 제69회 총회 제정
1985년 9월 제70회 총회 개정
1990년 9월 제75회 총회 개정
2003년 9월 제88회 총회 개정
2004년 9월 제89회 총회 개정
2013년 9월 제98회 총회 개정
2014년 9월 제99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
2023년 9월 제108회 총회 개정
2025년 5월 제109회 총회 실행위원회 개정
2025년 9월 제110회 총회 개정